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1.21.)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총무위원회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 4.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 18.

2. 개정이유

-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과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거 신설(안 제24조 제3항)
- 나. 근로자 전입정착금 신설(안 제24조의2)
- 다. 법령 개정사항, 조직개편사항 등 반영(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
- 라. 법령위임없이 주민제한 사항 등 법령입안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1조, 제25조제3항, 제26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전입정착금 지원으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기업의 고용 안정화에 기하고 우리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을 통하여 인구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보조금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 삭제와 주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순화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 다.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 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 18.

2. 요구이유

-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
 - 1) (현행) 2018년 12월 31일⇒(개정) 2021년 12월 31일
 - 2)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제1항)
 - 3)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감면(안 7조)
 - 5)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나. 법령 위임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안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은 군세 감면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어 3년간 연장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개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읍”로 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 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 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 18.

2. 요구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 7. 1. 시행)에 따라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를 도입하였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보험료 지원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안 제3조)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제3조 지원대상 규정으로 이동
- 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3조)
 - 1) 현행 : 월 10,400원 미만
 - 2)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 하는 것으로 개편.
- 나. 보험료 상한과 하한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2018년 7월 1일 시행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3,100원으로 고시.
- 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